

국내 학술지 발간규칙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이다은)

제정 2002.12.31.

개정 2003.12.30.

개정 2006. 7.14.

개정 2010.11.29.

개정 2014.10.17.

개정 2015.12.30.

개정 2022.04.28.

개정 2025.11.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해양정책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 논문의 투고부터 접수, 평가, 편집,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해양정책연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7.)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연구원 내는 연구위원 이상, 연구원 외는 대학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7.14., 2015.12.30.)

- ③편집위원 중 연구원 내 편집위원은 부연구위원 이상이나 원장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④외부 편집위원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갖추고 대학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그와 대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⑤외부 편집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임기 중인 편집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30.)
- ⑥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역할) ①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의뢰,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 중재, 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하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④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단,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으로 전제하였거나 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건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임기) ①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06.7.14., 2014.10.17.)

②편집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1회 개최한다.(개정 2010.11.29)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서면회의시 회의참석자는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지정된 날짜까지 편집위원장과 간사에게 제출한다.(신설 2015.12.30.)

⑦서면회의시 간사는 회의 내용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하고 결정사항을 수렴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신설 2015.12.30.)

제7조(회의 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에게는 소정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5.11.27.)

제3장 심사위원

제8조(심사위원의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의 심사를 위해 세부 전공 분야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의 선정은 본 규정 제9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신설 2022.04.28.)

제9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자 또는 이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해운·물류·항만·수산·환경 전반에 걸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춘 자
3. 연평균 1회 이상의 원저, 논문 또는 보고서 발표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제10조(심사위원의 역할 및 준수사항) ①각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할 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고하여 적격한 심사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②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양정책연구 온라인 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1차 독촉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은 1차 독촉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등록하여야 한다. 1차 독촉을 받고도 심사의견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④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⑤논문심사 의뢰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⑥심사위원이 논문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통해, 해당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독창적 내용을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개발원 연구윤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신설 2014.10.17.)

제11조(심사비)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의 평가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한다.

1. 체계평가: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와 논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논지 전개방식의 타당성 10점, 표현력 및 용어사용의 타당성 10점, 참고문헌 및 각주 활용의 적절성 5점, 영문요약의 적절성 5점)(개정 2003.12.30., 2014.10.17., 2015.12.30.)

2. 내용평가: 내용의 독창성과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의 여부(논제 및 주제의 참신성 15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점, 연구의 사회적·정책적 기여도 15점,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20점)(개정 2014.10.17., 2015.12.30.)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시스템에 심사의견을 등록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을 요구할 경우, <별표 1>의 양식을 제공한다.(별표개정2003.12.30., 2014.10.17.)

②편집위원장은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을 배정하며, 해당 편집위원은 각 논문별로 심사의견이 모두 등록되면 온라인시스템에 편집위원 총평을 등

록한다.(개정 2014.10.17.)

③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18조와 제19조의 준수 여부와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 및 학술적 가치가 현저하게 미흡한지의 여부를 예비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원고는 반려한다.
2.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를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온라인시스템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수정한 논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0.17.)
4. ‘수정 게재’ 판정에 따라 수정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0.17.)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온라인시스템에 다시 등록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 심사위원은 원 심사자로 한다.(개정 2014.10.17., 2022.04.28.)
6. 재심 판정은 1차에 한하며, 이 경우 또다시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이 나올 때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수정 게재’의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요청을 하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이 확인함으로써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2.04.28.)
7.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 편집위원의 건의에 따라 1차 심사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해촉 및 개임할 수 있다.(신설 2014.10.17.)
8. 심사절차는 편집위원장이 결재함으로써 종료한다.(신설 2014.10.17..).

제14조(심사기간)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차 심사(10일 이내)와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행정 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투고자가 논문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수정 게재’의 경우는 7일,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4.28.)

제15조(판정)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심사자 3인의 평균점수)을 참조하여, <별표 8> ‘논문 심사 절차 및 판정표’의 기준으로 종합 판정을 내린다.(개정 2022.04.28., 별표 호 변경 2025.11.27.)

1. 무수정 게재: 92점 이상(개정 2014.10.17.)
2. 수정 게재: 85~91점(개정 2014.10.17.)
3. 수정 재심사: 63~84점(개정 2014.10.17.)
4. 게재 불가: 63점 미만(개정 2014.10.17.)

②‘무수정 게재’ 논문과 ‘수정 후 게재’의 수정 논문은 영문 초록 감수를 포함한 교정·교열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한다(개정 2022.04.28.)

③‘수정 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수정 사항이 경미하여, 일부수정 후 편집위원의 확인을 거쳐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개정 2014.10.17.)

④‘수정 후 재심사’는 수정 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개정 2022.04.28.)

⑤‘게재 불가’는 논문의 내용에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낮아 학술지에 게재하기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논문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제1항에 따른 판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다른 경우, 편집위원장은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4.10.17.)

제16조(이의제기) ①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수정 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재심 또는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개정 2022.04.28.)

③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접수, 발간

제17조(투고자격)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과 관련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 또는 관련 전문가에 한한다.

제18조(투고원고의 제한) ①본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해양, 해운, 물류, 항만, 수산 등의 분야에 학술적·정책적 연구의 의의가 있는 논문으로 제한한다.(개정 2015.12.30.)

②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9조(원고의 작성 및 제출) ①원고는 HWP 또는 MS WORD(영문원고시) 이상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 크기로 작성하며, 제출논문에는 그림, 도표, 사진, 목차, 참고문헌, 영문요약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영문 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과 상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2.04.28.)

③원고 작성 및 투고의 세부 내용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지침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10.17.)

④<삭제>(개정 2015.12.30.)

⑤투고논문 제출 시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논문파일을 등록하고, <별표2>의 투고신청서와 <별표3>의 논문투고동의서, <별표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공동저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5>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간사는 <별표6> 및 <별표7>와 같이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2010.11.29., 2014.10.17., 2015.12.30., 2022.04.28. 별표개정 2015.12.30., 2022.04.28., 2025.11.27., 별표신설 2025.11.27.)

⑥논문투고지침 준수가 확인되어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20조(원고의 접수) 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동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로 한다.(개정 2014.10.17.)

②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 종료 즉시 투고자에게 접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형식 준수 여부, 제17와 제18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 구비 여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유사도 결과 확인 등 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 구비 여부를 예비심사한 후, 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평가를 의뢰한다.(개정 2014.10.17., 2022.04.28.)

④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논문은 사유와 함께 반려한다.(개정 2014.10.17.)

제21조(게재의 철회 및 연기) ①‘게재확정’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제1항에 따른 게재 연기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외의 사유로는 게재를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0.17.)

③투고자는 ‘게재확정’된 논문의 게재를 철회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게재를 철회할 경우 기존의 ‘게재확정’ 판정은 무효로 하며, 해당 투고자에게는 적절한 심사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10.17.)

④‘게재확정’ 논문의 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9>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2.04.28., 별표 호 변경 2025.11.27.)

제22조(원고의 게재) ①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을 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확인 또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개정 2014.10.17.)

③최종 심사까지 ‘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한다.(개정 2003.12.30)

④투고원고가 ‘게재 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게재 예정 원고는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

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⑥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원저작자 고유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발간 즉시 개발원에 귀속된다.(신설 2014.10.17.)

제23조(발간 및 배포) ①1년에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발간일 또는 발간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학술지의 발간부수와 배포 방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발간 직후 3권(별쇄본 별도)을 증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에 관한 경과규칙)이 규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31일 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해양정책연구 제 권 호

논문심사의견서

☐ 초심 ☐ 재심

심사번호			논문관리번호					
제 목								
심사총평								
심사기준	영역	내 용	판정등급					
			A	B	C	D	E	
	[체계 평가]	논지 전개방식의 타당성	10 ()	8 ()	6 ()	4 ()	2 ()	
		학술논문으로서의 체계와 논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표현력 및 용어사용의 타당성	10 ()	8 ()	6 ()	4 ()	2 ()
			참고문헌 및 각주활용의 적절성	5 ()	4 ()	3 ()	2 ()	1 ()
			영문 요약의 적절성	5 ()	4 ()	3 ()	2 ()	1 ()
	[내용 평가]	논제 및 주제의 참신성	15 ()	12 ()	9 ()	6 ()	3 ()	
		내용의 독창성과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의 여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16 ()	12 ()	8 ()	4 ()
			연구의 사회적·정책적 기여도	15 ()	12 ()	9 ()	6 ()	3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20 ()	16 ()	12 ()	8 ()	4 ()
판정등급의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을 기입해 주세요		총점[100] ()						

최종판정	무수정 게재 [92~100]	수정 게재 [85~91]	수정 후 재심사 [63~84]	게재불가 [0~62]
※ 심사의 최종판정은 심사위원 3인의 점수 평균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201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별표 2>

논문투고신청서

접수일자	
논문 관리번호	

제1연구 자	성 명	(영문)		
	기관명			
	부 서	(직위)		
	주 소			
	전 화	(fax)	e-mail	
교신저자	성 명	(영문)		
	기관명			
	부 서	(직위)		
	주 소			
	전 화	(fax)	e-mail	
공동 연구자 성명	(영문)			
	(영문)			

※ 제1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는 투고신청 후 변경할 수 없다.

논문제목	(한글)	작성 언어	
	(영문.외국어)		
논문주제	해운() 물류() 항만() 환경() 수산() 어촌() 정보화() GIS() 기타()		
특기사항			
원고요약	<별표3> 논문투고동의서와 <별표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도 제출해주세요.(←제출 시 삭제해주세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표시 시 <별표5>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추가 제출 필요		

* 원고요약은 원고작성언어와 상관없이 국문으로 작성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되, 신청서를 포함해 2장을 초과할 수 없다.

* 투고시 원고(그림, 표, 사진, 영문초록 포함) 1부와 컴퓨터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별지)

원고요약	
------	--

<별표 3 >

논문 투고 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_____
- 영문 : _____

모든 저자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해양정책연구」에 위 논문 게재를 신청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 혹은 출판된 적이 없는 논문입니다.
2. 본인이 투고한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대표저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본인은 위 논문이 「해양정책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를 귀원에 이양합니다.

저자	교신저자 표시	성명	소속	연락처	자필서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제5저자					

※ 원고 제출 시 위 양식을 작성, 서명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중 택일하여 「해양정책연구연구」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51-797-4359 / 이메일: journal@kmi.re.kr).

20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별표 4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제목 :

저 자 : 000, 000, 000

위 본인은 학술지 해양정책연구 투고자로서 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첫째, 해양정책연구 규정(『국내학술지발간규칙』)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4촌 이내 가족 등)의 공동저자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명확히 보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합니다.

저자	교신저자 표시	성명	소속	자필서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제5저자				

20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연구윤리 준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항목			결과	
			그렇다	아니다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변조	2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표절	3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였는가?		
	4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일부에만 표시하였는가?		
	5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6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7	인용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8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내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9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상의 문장을 글자체와 글씨크기를 달리하여 문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0	[간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글 속에 인용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부당한 저자 표시	11	[재인용] 1차 문헌을 인용한 2차 문헌을 인용하면서 1차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1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중복 게재	1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가?		
	14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였는가?		
	15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16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추가해 저작물 목록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가?		
※ 출처: 카피킬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015년 10월, (주)무하유				
본인은 원고를 작성 및 발간하는 과정에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주저자) (인)				

<별표 5>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논문 개요

논문 제목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성명/소속/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지원액(원)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프로그램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 논문명 : - 논문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예시)

항목	내용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 이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1.08.11.개정판)'내 '붙임6.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예시)'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별표 6>

논문 투고 관리대장

권호수	논문관리번호	논문접수일자	제목	제1저자				교신저자			
				성명	소속	전화 번호	이메일	성명	소속	전화 번호	이메일

※ 교신저자 : 제1저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별표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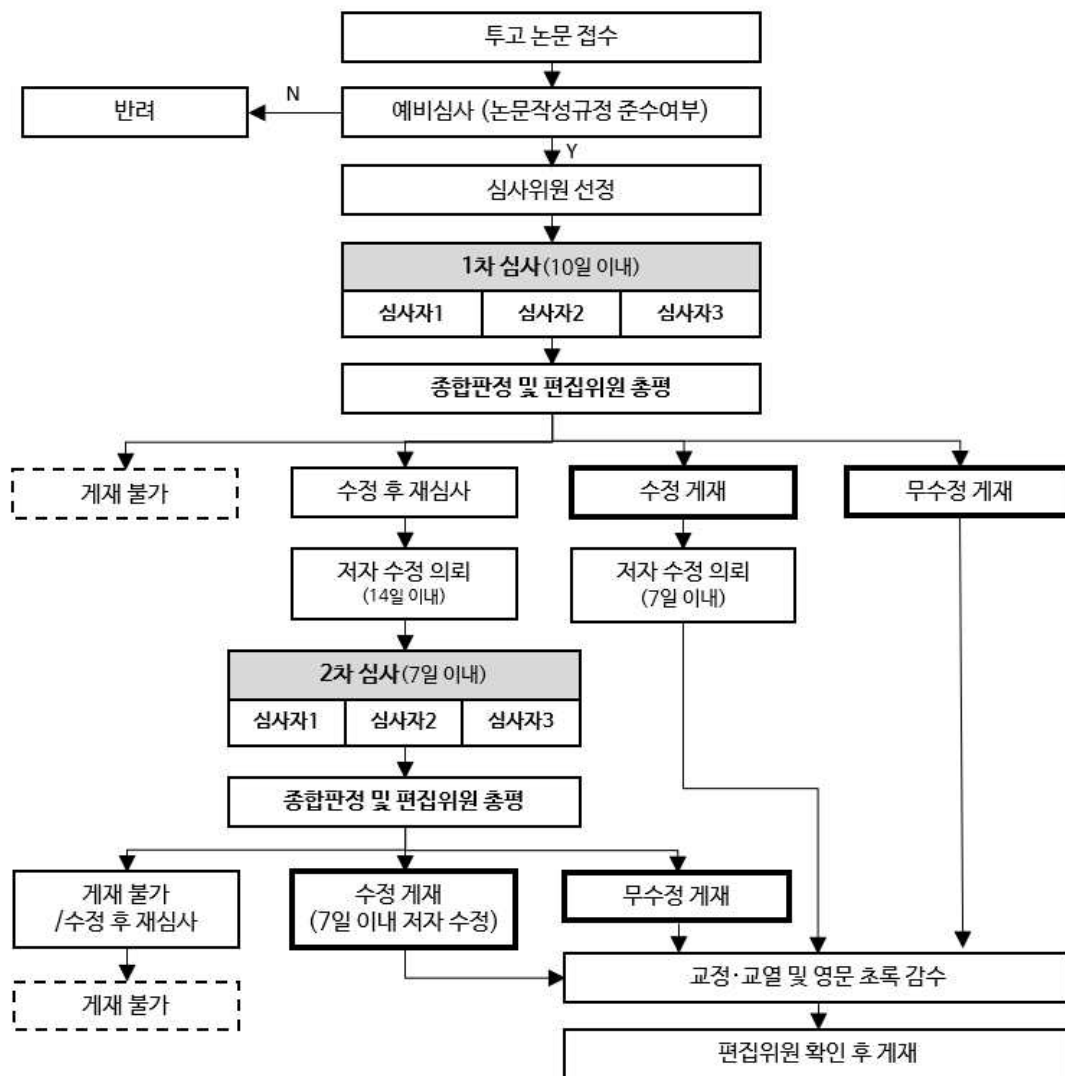
논문 심사 관리대장

권호수	논문 관리 번호	논문접 수일자	제목	심사위원				심사진행현황					
				심사 번호	성명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1차평가		2차평가		게재확 정일	비고
								심사일	점수	심사일	점수		

<별표 8>

논문 심사 절차 및 판정표

< 논문 심사 절차 >



< 심사 종합판정 표 >

유형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종합판정
1	A	A	A	A. 무수정 게재
2	A	A	B	
3	A	A	C	B. 수정 게재
4	A	A	D	
5	B	B	A	
6	B	B	B	
7	B	B	C	
8	B	A	C	
9	B	A	D	C. 수정 후 재심사
10	B	B	D	
11	C	C	A	
12	C	C	B	
13	C	C	C	
14	C	A	D	
15	C	B	D	
16	C	C	D	
17	D	D	D	D. 게재 불가
18	D	D	A	
19	D	D	B	
20	D	D	C	

<별표 9>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 접수번호 :

▷ 논문제목 :

▷ 저 자 :

위 논문에 대해 _____에 따라 「해양정책연구」 제 권 제 호(발간일 202 년
월 일)에 게재 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해양정책연구 편집위원회